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6. 30.] [환경부령 제1046호, 2023. 6. 30., 일부개정]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042-481-7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5. 1. 12.]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1., 2021. 8. 1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 10. 19.>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1. 9., 2018. 3. 30., 2020. 7. 27., 2022. 2. 22.>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삭제 <2019. 6. 18.>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의2. 삭제 <2021. 8. 10.>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법령·훈령·예규·고시의 심사
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의 질의·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점검
2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⑤ 삭제 <2010. 4. 13.>
-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 1. 12.>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8. 3. 30.>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9. 삭제 <2015. 1. 12.>
-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 4. 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12. 5. 3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2012. 5. 31.>]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예보기술과·국가태풍센터·재해기상대응팀 및 영향예보지원팀을 두며, 총괄예보관·예보정책과장·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영향예보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12., 2015. 6. 26., 2015. 10. 19., 2016. 12. 30., 2018. 3. 30., 2019. 12. 31., 2021. 12. 31., 2023. 3. 28.>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9. 7. 23., 2020. 7. 27., 2021. 8. 10.>

-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지진해일·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 6. 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 9. 삭제 <2010. 4. 13.>
-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 11. 삭제 <2010. 4. 13.>
- 12. 단기·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14.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유해화학물질·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21. 8. 10.>

- 1. 전국 예보의 분석·생산 및 총괄
- 2.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3.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 3의2. 태풍 특보의 생산 및 통보
- 4. 삭제 <2015. 1. 12.>

5. 전국 기상예보·기상특보 및 기상정보의 통보
6. 삭제 <2015. 1. 12.>
7.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생산 및 통보
8. 삭제 <2016. 12. 30.>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 ⑤ 삭제 <2015. 1. 12.>
 - ⑥ 삭제 <2015. 1. 12.>
 - ⑦ 삭제 <2015. 1. 12.>
 - ⑧ 삭제 <2013. 3. 23.>
 - ⑨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 4. 13., 2013. 3. 23., 2013. 10. 16., 2015. 1. 12., 2016. 12. 30.>
 1.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삭제 <2016. 12. 30.>
 3. 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6. 26.>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 6. 5.>
 9. 삭제 <2015. 6. 26.>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 ⑩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2.>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 ⑪ 재해기상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2. 31.>
 1. 재해·위험·특이기상의 분석
 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
 3. 재해·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제공
 4. 재해·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의 생산·제공
 5. 재해·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6. 재해·위험·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제공
 7.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의 구축·운영
 9. 예보분석기법의 개발·보급·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 ⑫ 영향예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3. 28.>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제공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5.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관리
6.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7.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6. 12. 30.>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계측표준협력과·정보통신기술과·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8. 3. 30., 2019. 6. 18.>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8. 3. 30., 2019. 7. 2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6. 18.>
7. 삭제 <2019. 6. 18.>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9. 6. 18.>
13. 삭제 <2019. 6. 18.>
14. 삭제 <2019. 6. 18.>
15. 삭제 <2019. 6. 18.>
16. 청 내 기상측기(氣象測器)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1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
19.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20.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0. 4. 13.>

⑤ 계측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2., 2018. 3. 30., 2019. 6. 18.>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심의·조정·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개정 및 대상 선정·심의·조정
4. 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의 수립
5. 기상측기의 검·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8.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2., 2019. 6. 18.>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삭제 <2018. 3. 30.>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2. 삭제 <2018. 3. 30.>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 2. 28.>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 19의2. 기상관측장비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 ⑦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2., 2015. 10. 19.>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 및 관리
-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3. 30., 2023. 3. 28.>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운영 및 평가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3.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4.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8.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처리·예방·대응
- 9.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10.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처리·예방·대응
- ⑨ 삭제 <2016. 12. 30.>

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과·기후변화감시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해양기상과장·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문기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9. 12. 31., 2020. 5. 4.>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9. 7. 23., 2020. 5. 4., 2021. 8. 10., 2023. 3. 28.>

- 1. 기후예측, 이상기후 전망, 기후변화 감시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후·기후변화(감시·분석·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 4.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 7. 장기에보 평가에 관한 사항
-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에 관한 사항. 다만,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9.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9의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 9의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 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 9의5.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1. 삭제 <2016. 12. 30.>
- 12. 삭제 <2016. 12. 30.>
- 13. 삭제 <2013. 10. 16.>
- 14. 삭제 <2013. 10. 16.>
- 15. 삭제 <2016. 12. 30.>
- 15의2. 삭제 <2016. 12. 30.>
- 15의3. 삭제 <2016. 12. 30.>
- 15의4. 삭제 <2016. 12. 30.>
- 15의5. 삭제 <2016. 12. 30.>
- 15의6. 삭제 <2016. 12. 30.>
- 15의7. 삭제 <2016. 12. 30.>
- 16. 삭제 <2013. 10. 16.>
- 17. 삭제 <2013. 10. 16.>
- 18. 삭제 <2013. 10. 16.>

19. 삭제 <2013. 10. 16.>
20. 삭제 <2013. 10. 16.>
21. 삭제 <2017. 2. 28.>
22. 삭제 <2019. 7. 23.>
-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5. 1. 12., 2016. 12. 30., 2020. 5. 4.>
 1. 기후예측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1의2.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
 - 1의3.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의4.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개선·보급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검증
 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4. 삭제 <2015. 1. 12.>
 5.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삭제 <2013. 10. 16.>
 7. 삭제 <2020. 5. 4.>
 8. 삭제 <2020. 5. 4.>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 9의2. 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 9의3. 기후예측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0. 삭제 <2010. 4. 13.>
 11. 삭제 <2015. 1. 12.>
 - 11의2. 삭제 <2015. 1. 12.>
 12. 삭제 <2013. 10. 16.>
 13. 삭제 <2013. 10. 16.>
 14. 삭제 <2013. 10. 16.>
 15. 삭제 <2013. 10. 16.>
 16. 삭제 <2013. 10. 16.>
 17. 삭제 <2020. 5. 4.>
 18. 삭제 <2013. 10. 16.>
 19. 삭제 <2013. 10. 16.>
 20. 삭제 <2013. 10. 16.>
-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 12., 2015. 6. 26., 2018. 3. 30.>
 1.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
 2. 삭제 <2018. 3. 30.>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삭제 <2018. 3. 30.>
 5. 삭제 <2018. 3. 30.>
 6. 삭제 <2019. 7. 23.>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 해양기상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해양 위험기상현상에 관한 사항
14.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운영
15. 해양기상업무 관련 국내외 협력
-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3. 30., 2019. 7. 23., 2020. 5. 4.>
 1. 기후분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3. 기후·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조사·분석
 4.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6. 기후분석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7.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8. 삭제 <2020. 5. 4.>
 9. 기후변화 과학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10. 기후·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정
 1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개선 및 인증
 1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1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1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17. 지역기후변화 이해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18.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9.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 ⑦ 수문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 12. 30., 2020. 5. 4.>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예측·분석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4. 수문기상 및 가뭄 대응 시스템 운영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
 7. 수문기상,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
 9.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8. 1. 9.>

-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7. 6. 28., 2019. 7. 23., 2021. 8. 10.>
 1. 기상산업·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 4. 13.>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감독
15.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16. 삭제 <2015. 1. 12.>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16. 12. 30.>
- ⑤ 삭제 <2015. 1. 12.>
-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20. 2. 25., 2021. 8. 10.>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 12.>
 6.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 6의2.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삭제 <2021. 8. 10.>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배포
-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3. 30.>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4. 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응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발굴·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 12.]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지진화산감시과·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 3. 30., 2021. 12. 31.>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3. 30., 2021. 12. 31.>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방안 마련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감시
2.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보
3.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4. 지진·지진해일·화산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 국내외 화산폭발 및 화산재의 확산·이동 감시 및 통보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2. 31.>

1.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2.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5.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6.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7.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8.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9. 청 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10. 지진의 규모·진도 및 진앙위치·진원깊이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1.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2. 31., 2022. 12. 20.>

1. 청 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의 구축·운영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
-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운영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 7의2.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8.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9.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운영
- 10.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 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 12. 지진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 13. 청 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본조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18. 3. 30.]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개정 2016. 12. 30.>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모델개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1., 2021. 8. 10., 2021. 12. 31.>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2. 31., 2021. 8. 10.>

-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 5.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관리
- 6. 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단의 지도·감독

6의2. 삭제 <2021. 8. 10.>

6의3.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6의4. 수치예보모델 검증 및 평가

6의5.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측자료통합·자료동화·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 품질검사 및 관리
-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개선
-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운영 및 관리
-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
-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 8.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9. 위험기상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 개발 및 개선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 8. 10.>

- 1.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 12. 30.>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7. 2. 28.>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6. 30.>

1.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3. 교수요원·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4.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관리
5. 국제 기상·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6.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7.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국제협력
8. 삭제 <2021. 8. 10.>
9. 기상교실 운영 및 청 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기상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관리
11.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 외부강사 선정 및 초빙
3.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 교육훈련과정 연구·개발 및 강의 교재 편찬·관리
6.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7. 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 삭제 <2023. 6. 30.>
9. 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관리
10.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장 지방기상청

제10조의3(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①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6. 26.]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1. 12., 2019. 6. 18.>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예보과·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5. 10. 19., 2016. 2. 29., 2019. 6. 18., 2019. 12. 31., 2020. 7. 27., 2023. 6. 30.>

③ 삭제 <2011. 8. 30.>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30., 2015. 6. 26.>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7. 2. 28.>

1. 청내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 1의2.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7. 삭제 <2015. 10. 19.>

8. 삭제 <2010. 4. 13.>
9. 삭제 <2010. 4. 13.>
-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5. 1. 12., 2015. 6. 26., 2015. 10. 19., 2017. 2. 28., 2023. 3. 28.>
 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해양관측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5.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 5의2. 삭제 <2015. 6. 26.>
6.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청내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9.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9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11. 삭제 <2015. 10. 19.>
12. 삭제 <2015. 1. 12.>
13. 삭제 <2015. 10. 19.>
14. 삭제 <2015. 10. 19.>
-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6. 26., 2017. 2. 28., 2019. 6. 18., 2019. 9. 24., 2022. 12. 20.>
 1. 청내 기후·서비스진흥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기상자료 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8. 삭제 <2017. 2. 28.>
9.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10. 삭제 <2017. 2. 28.>
11.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26., 2019. 6. 18.>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9. 6. 18., 2019. 12. 31.>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6. 26., 2017. 2. 28., 2019. 6. 18.>

1. 기상지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지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해양관측을 포함한다)
4. 기상지청내 예산의 집행 및 홍보업무
5.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6.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기상에 관한 상담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10.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6. 26., 2019. 9. 24.>

1. 관할지역 내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상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3.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7.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8. 삭제 <2017. 2. 28.>
9.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 6. 18.>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20. 7. 27.>

1. 대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울산·창원·목포·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기후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장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15. 6. 26.>

[제목개정 2015. 6. 26.]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1. 12.>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2. 5. 31., 2015. 10. 19., 2019. 12. 31., 2020. 5. 4., 2021. 8. 10.>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21. 8. 10.>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삭제 <2015. 10. 19.>
3. 삭제 <2015. 10. 19.>
4. 삭제 <2021. 8. 10.>
- 4의2. 삭제 <2021. 8. 10.>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 7의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응용에 관한 연구
- 7의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 7의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5. 10. 19., 2021. 8. 1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8.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9.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10.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1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4. 13., 2011. 8. 30.>

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 삭제 <2021. 8. 10.>
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1. 8. 10.>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 4. 13.>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31., 2013. 3. 23., 2015. 1. 12.>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지원팀·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며, 레이더지원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30., 2012. 5. 31., 2015. 10. 19., 2020. 5. 4., 2021. 10. 29.>

③ 레이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0. 29.>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레이더관측 전략의 수립 및 조정
3. 낙뢰·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4. 유관기관과의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기상레이더 시설의 관리 및 개선
10.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30.,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21. 8. 10., 2021. 10. 29.>

1.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개선
3.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4.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5.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백령도·진도·성산·고산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상레이더관측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8. 낙뢰관측망·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⑤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30., 2013. 10. 16., 2015. 10. 19.>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운영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분석·처리·분배·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분석 및 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 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4. 13.]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 12. 30.>

-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7. 23.>
[본조신설 2016. 12. 30.]

제6장 항공기상청

-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7. 23.>
-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8. 6. 5., 2019. 6. 18., 2020. 12. 22., 2021. 8. 10., 2022. 12. 20., 2023. 3. 28.>
-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6. 12. 30.>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12. 30.>
-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2. 6. 17.>
-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22.>
-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개정 2011. 8. 30., 2016. 12. 30.>
- ⑤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신설 2010. 4. 13., 2011. 8. 30., 2016. 12. 30.>
- ⑥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신설 2016. 12. 30.>

⑦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0. 4. 13., 2015. 6. 26., 2016. 12. 30.>

⑧ 삭제 <2021. 12. 31.>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7조의3 삭제 <2016. 12. 30.>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수치모델링센터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 5. 30., 2013. 12. 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 해양기상과장 및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 5. 31., 2013. 10. 16., 2013. 12. 11., 2015. 6. 26., 2016. 12. 30., 2018. 6. 5., 2018. 10. 31.>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7., 2021. 10. 29., 2021. 12. 31., 2023. 3. 28.>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팀, 영향예보지원팀
2.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
4. 지방기상청: 예보과
5.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삭제 <2020. 7. 27.>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장 삭제 <2021. 12. 14.>

제19조 삭제 <2021. 12. 14.>

제9장 한시정원 <신설 2020. 2. 25.>

제20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에 둔다. <개정 2022. 2. 22., 2022. 12. 20.>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신설 2022. 2. 22.>

[본조신설 2020. 2. 25.]

부칙 <제331호,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9호,2009.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증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54호,2009.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0.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

라 총원하여야 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 2021. 12. 31.] 제4조제1항

부칙 <제415호, 2011.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 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2011.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1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 8. 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8. 28.]

부칙 <제496호,2013.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증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04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5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15. 1. 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증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1호,201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14.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은 2018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재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 삭제 <2022. 12. 20.>

부칙 <제605호,201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0. 29.>

부칙 <제623호,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6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② 삭제 <2021. 12. 31.>

③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1. 12. 31.]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부칙 <제693호,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② 삭제 <2021. 12. 31.>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1. 12. 31.]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부칙 <제706호,2017. 6. 28.>(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739호,2018.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2. 25.,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부칙 <제762호,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3. 2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2023. 3. 28.>

부칙 <제775호,201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6. 17.>

부칙 <제818호,2019.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2. 31.>

부칙 <제853호,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877호,2020.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예보활용팀은 2024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모델개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 12. 20.>

부칙 <제950호,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지원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 12. 31.>

부칙 <제955호,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2.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3.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재해기상대응팀 및 지진화산기술팀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해기상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기술과장이,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5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9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6명으로 본다.

부칙 <제976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 2022.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14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6. 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40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2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5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4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1026호,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영향예보지원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영향예보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영향예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6호,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제10조의3제1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지방기상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전주기상지청	전라북도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의3제2항 관련)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대구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대	부산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3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30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7
행정주사·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2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 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3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기상연구관	9
기상연구사	8
학예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기상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3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3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3
행정주사·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 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2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기상연구관	9
기상연구사	8
학예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기상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총계	50
일반직 계	5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14
기상연구사	1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7
일반직 계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8
일반직 계	1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 는 방송통신주사	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519
일반직 계	51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9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6

운전서기보	11
방호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기상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9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513
일반직 계	513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 문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7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 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7

운전서기보	11
방호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7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공업전문관 · 기상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9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계	51
일반직 계	5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기상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기상연구관	10
기상연구사	1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51
일반직 계	5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기상연구관	10
기상연구사	1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총계	45
일반직 계	4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 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3
기상연구사	4
사무운영서기보	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총계	45
일반직 계	4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 신서기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3
기상연구사	4
사무운영서기보	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총계	118
일반직계	11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17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7항 관련)

총계	115
일반직 계	1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13
전문직공무원	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삭제 <2016. 12. 3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21. 12. 1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2. 20.>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1. 제2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2.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소	1